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9. 23.(목) /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 과장 장구중, 사무관 장형석, 주무관 손주희 · ☎ (044) 201-3823, 3824, 3825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동현, 사무관 정 룡, 주무관 권민희 · ☎ (044) 201-3819, 3822	
	자동차운행보험과 자동차보험팀	담당자	· 팀장 김기훈, 주무관 유세형 · ☎ (044) 201-4873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 탄소중립 가속화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 수소연료 1kg당 3,500원...수소경제 활성화·국민안전 강화 기대 -

-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09.24)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20.7.16)”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21.9월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 운행 중

-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단가 등

○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추정)

○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 참고3 참조

□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9.24)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9.14)하였다.

*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수소충전내역 관리, 보조금 지급확정 관리 등을 추가하고, 충전소에는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 등

□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여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 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장형석 사무관, 손주희 주무관(☎044-201-3824, 044-201-382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사업자의 질병 등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운전하는 자 포함)
	지급기준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일 것 2. 운전업무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3.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일시·장소, 구매량, 구매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4. 연료구매카드로 수소를 구매할 것 등
	지급방법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을 청구
	지급정지	1.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2.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수소충전소
	지급단가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를 3,500원/kg로 규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규정
특수자동차	자동차대 여사업용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
공제분쟁조정 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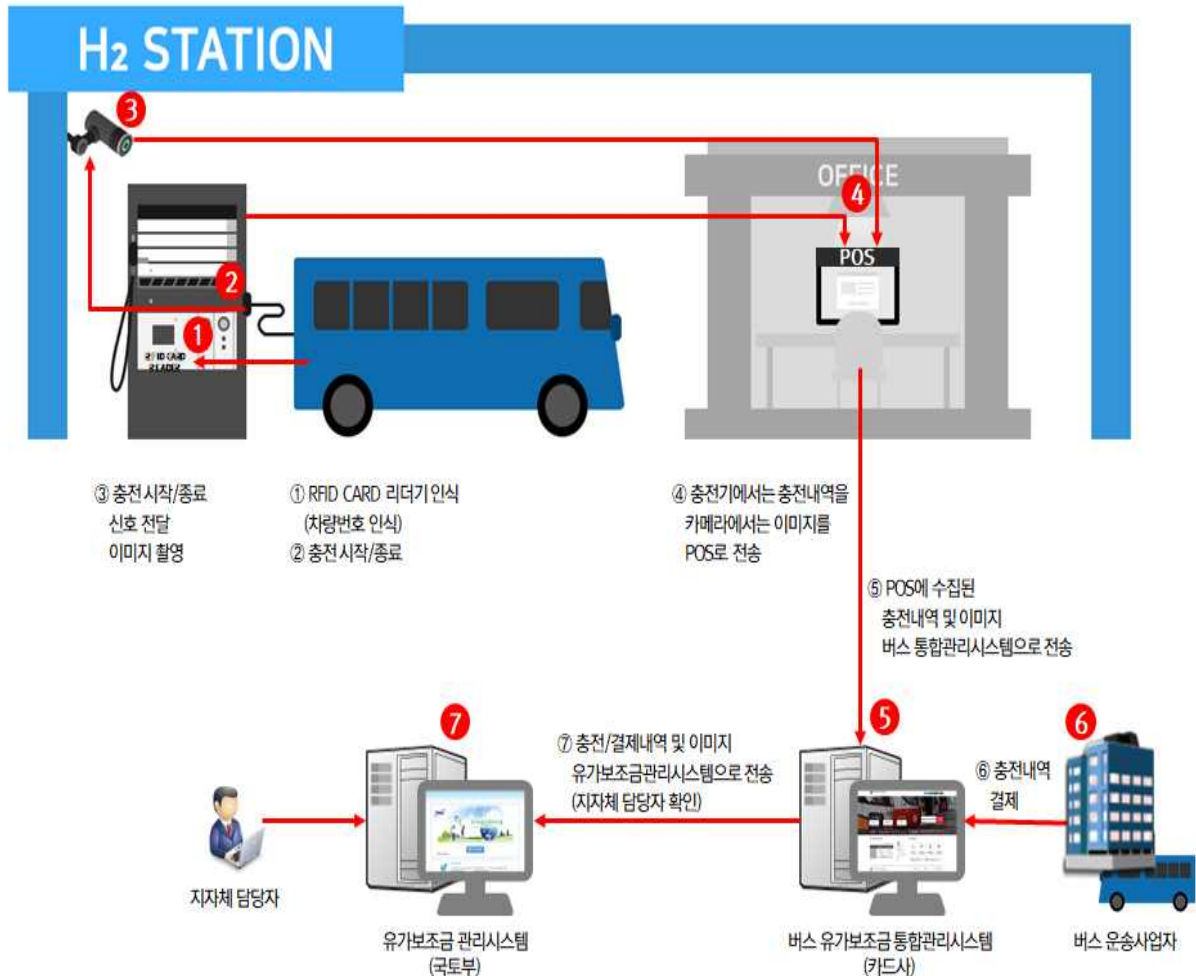
전국 수소버스 보급현황('21년)

(단위 : 대수)

구분	'21.9월말	'21.12월말(예상)	비고
합계	98	189	
서울시	4	14	
부산시	20	36	
대구시	0	2	
인천시	0	5	
광주시	6	12	
대전시	4	23	
울산시	6	9	
경기도	0	12	
강원도	0	0	
충북도	0	0	
충남도	15	18	
전북도	15	32	
전남도	0	0	
경북도	0	0	
경남도	28	31	
제주도	0	0	
세종시	0	0	

참고3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 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버스 인식을 위해 RFID CARD로 리더기 인식
- ② 수소버스 수소연료 충전
- ③ 충전소내 CCTV로 수소버스 충전이미지 촬영
- ④ 충전기의 충전내역과 CCTV의 이미지를 충전소 POS로 전송
- ⑤ POS에 수집된 충전내역 및 이미지를 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⑥ 버스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
- ⑦ 카드사는 결제내역 및 이미지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⑧ 지자체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결제내역 및 이미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